

선수위원회 규정

2014. 12. 26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조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협회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② 시도체조협회 및 산하연맹체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리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 확산
2. 선수 및 지도자 권리 보호/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리 침해(폭력·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 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협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 침해(선수 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인권 침해(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제16조(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선수권익침해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기관이며 협회의 상별 위원회가 2차 조사기관이다.

② 단, 선수 권리 침해가 중대하고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 상별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2. 강간, 장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및 지도자: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4. 제1호와 제3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5. 징계일 현재 선수,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 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침해를 당한 선수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제16조 제4항의 당해 위원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협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협회의 재심

기간 중에도 1차에서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본인 및 소속단체에 통보한다.
- ④ 재심청구에 대한 협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부 칙 (2013. 03.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협회 선수위원회규정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